제1장

신문의 발전과 신문윤리강령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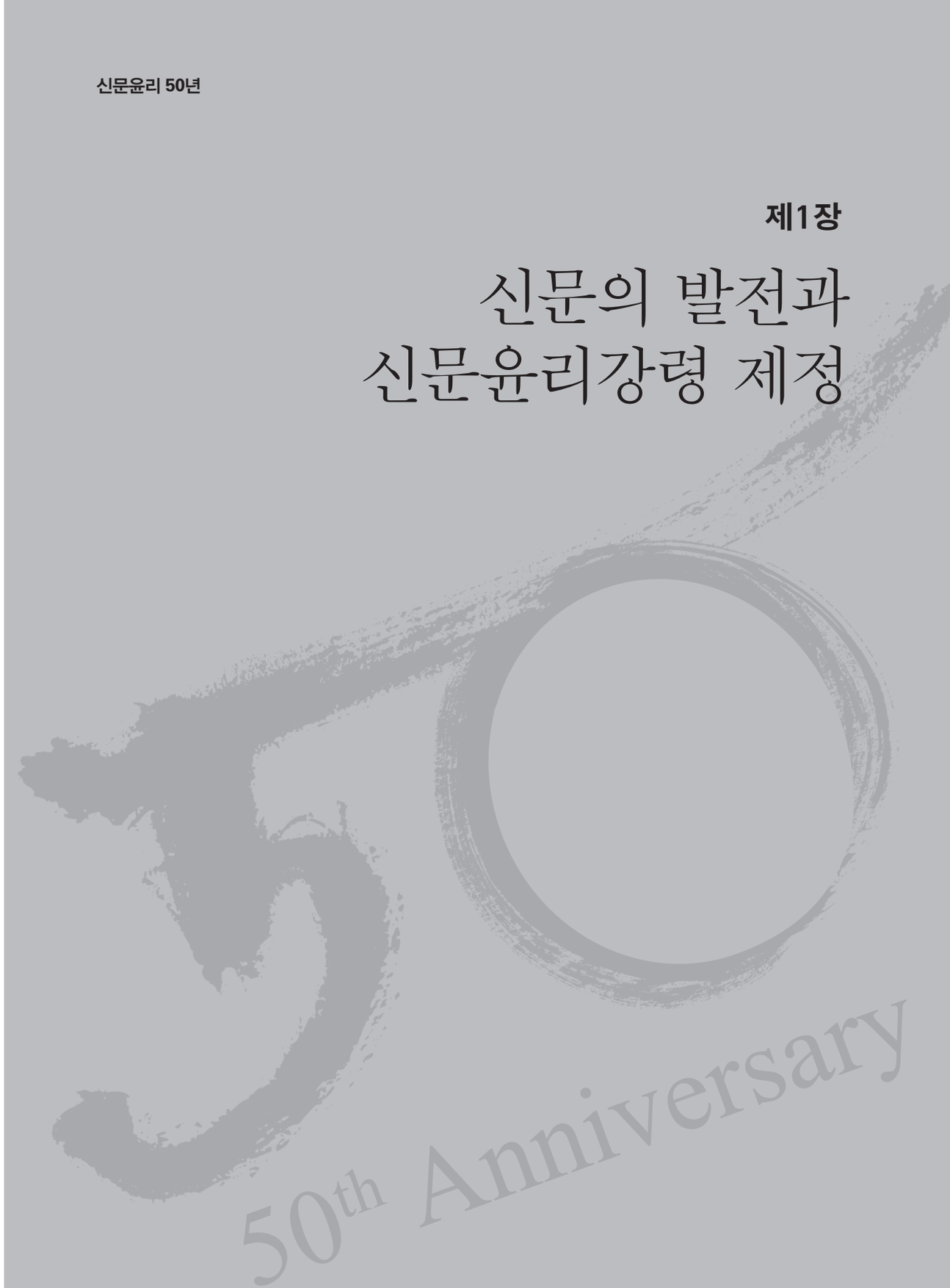

제1절

해방과 신문의 발전

1. 8 · 15 광복과 언론탄압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는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광복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었다. 갑자기 찾아든 해방정국으로 인해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고 일제 강점기 당시의 수탈로 경제는 바닥까지 침체된 상태였다.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시설은 황폐화 되었고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떠도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활기를 찾은 것은 언론계였다.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우리 땅에 들어온 미군정은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면서 신문발행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자유언론에 대한 바람은 심각한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문과 통신을 양산, 언론개화의 장관을 이루었다. 해방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46년 5월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무려 242종에 달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다시 274개로 늘어났을 정도였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 이후 6년 만인 1945년 11월 23일과 12월 1일 복간되었고, 이와 함께 다양한 신문들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행되면서 서울장안은 신문들의 격전장으로 변해갔다. 가장 기민하고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좌익계열의 신문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태도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좌익계열 신문들은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며 국민들 역시 좌익이나 우익계열 신문을 가리지 않고 구독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기선을 잡은 좌익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발판삼아 괄목할만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건준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 본의 아니게 공산주의자로 몰린 예도 적지 않았다. 언론계도 좌익색채를 띤 신문이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양대 민족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우익을 대변하면서 신문은 좌우로 갈려 제각기 다른 논지를 펴가면서 치열하게 대치하게 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 ● 약칭하여 건준(建準)이라고도 한다. 1945년 8월 초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민족지도자를 찾았다. 이때 건국준비를 위한 민족의 대표기관과 정치세력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여운형이 그에 동조함으로써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10일 비밀리에 '건국동맹'이 조직되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사무실은 서울 풍문여자중학교에 두었고 위원장에 여운형, 부위원장에 안재홍 · 허헌, 총무부장에 최근우, 재무부장에 이규갑, 조직부장에 정백, 선전부장에 조동호, 무경부장에 권태석 등이 진용을 갖추었다. 설립목적은 민족의 총역량을 일원화하여 자주적으로 과도기의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8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국공작 5개 항을 제시하였고 9월 2일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②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③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이라는 3개 항이었다.

그러나 건준이 지나치게 좌익진보세력으로 조직되자 민족주의계 인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탈퇴하였으며, 부위원장 안재홍도 탈퇴하여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였다. 또한 정백 · 고경흠 등의 간부들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경성지부를 결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건준을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귀국을 기다리던 김성수 · 송진우 · 장덕수 등 우익진영은 이들 조직을 벽상조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시행된 총선 이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 뒤 ①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북한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는 단속하겠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각 언론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언론탄압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북한공산당과 제휴를 주장하는 민주독립당원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울신문은 여전히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방관적인 논조로 신문을 제작했다. 1949년에 들어서도 서울신문은 정부의 발표기사는 소극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정부는 군정법령 88호를 적용, 1949년 5월 서울신문에 대해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명예사장 오세창, 사장 박종화, 주필 오우식, 편집국장 우승규로 간부진용을 바꿈으로써 6월 20일자부터 속간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가 되어 공보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1949년 3월 국제신문이 치안을 방해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보처에 의해 폐간됨과 동시에 사회부장 김현제, 기자 최기덕이 구속되었다.

이렇게 건국 이후 1949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언론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일간신문 8개, 통신 1개사로, 정간 혹은 폐간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화성매일신문이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을 선전하는 기사를 5월 15일자에 게재하여 정간처분을 받았다. 신문지법과 군정법령 88호에 의거한 처분이었다.

2. 정부의 신문검열 시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사흘 뒤인 28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서울에서 발간하는 각 신문은 27일에도 전선에 기자를 특파, 전황을 석간에 보도하는 한편 그 후부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군의 침공현황을 호외로 속보, 시민들에게 알렸다.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계속하던 북한군은 마침내 28일 새벽 서울의 심장부까지 진격해 왔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각 언론사 종사원들은 신문사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덕분에 서울시내 언론인들은 대부분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28일부터 서울은 신문 없는 암흑세계로 돌변했다. 대신 미군정 때 폐간당한 좌익계열의 해동일보와 조선인민보가 얼마 후 속간되어 서울시민들은 국군이 서울을 탈환할 때까지 90일 동안 이 두 신문만을 대하게 되었다. 이 신문들은 변천하는 세계의 움직임에는 눈을 가리고 공산당 선전을 일방적으로 보도할 뿐이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 서울시민들은 '고난의 90일'에서 해방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종전의 중앙지들이 속속 속간됐다. 그러나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 대대적인 민족이동으로 모든 서울시민들은 부산이나 대구 등 남녘지방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언론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정부도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1·4 후퇴로 부산으로 옮긴 정부는 1952년 1월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소환데모를 벌이는 등 일대 소란을 피웠다. 이것이 5·26 정치파동의 전주곡이었다. 정부는 5월 26일 내무장관에 이범석을 임명하는 동시에 부산지구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검열제를 공포했다.

이날 47명의 야당의원이 탄 국회버스가 헌병대로 연행되었으며 그 밖의 많

은 야당의원들이 체포되었다. 한편으로는 땃벌떼, 백골단 따위의 정체불명 청년단을 동원, 테러를 자행했다. 다행히 언론검열만은 다음 날인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해제되었다. 전시수도 부산의 공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으며 언론계 역시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7월 국회에서 발췌개헌안이 기립투표로 통과됨으로써 5 · 26 정치파동은 막을 내렸다.

5 · 26 정치파동 ● 1950년 5월 30일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 · 이석기 · 서범석 · 임흥순 · 곽상훈 · 권중돈 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정치세력이 여야로 분명하게 갈라짐에 따라 비록 피난지의 언론일망정 민주국가의 생리대로 신문도 여야의 빛깔로 뚜렷하게 나누어졌다. 서울신문 · 연합신문이 여당에 속한다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야당의 입장이었다.

그해 3월 정부는 새로 신문 등 출판물법의 초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언론계는 맹렬히 반대했고 국회는 이를 거부하는 동시, 통감부시대의 유물인 신문지법까지 폐기시켰다. 이에 같은 해 8월 정부는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을 4부 장관 사의기사에 대해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이어 9월 중순 부산계엄당국은 동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고재욱을 소환, 전후 4일간 문초한 다음 석방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신문검열을 시도하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하였다.

3. 신문정비론과 언론계의 반발

1953년은 매우 어수선한 해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인 반공애국포로의 석방이 단행되었으며, 3년 동안 끌어오던 한국전쟁의 종막을 고하는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수도 부산에 머물러 있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였다. 부산에 있던 국회도 서울로 올라와 9월 하순부터 오래간만에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가 열었다.

국회는 9월 23일 여당계 신문인 연합신문의 일본특파원 정국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정부전복사건의 사실여부를 가려내고자 했다. 정국은은 10월 12일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26일에는 연합신문 발행인이며 자유당 국회의원인 양우정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심리를 받았다. 이어 12월 6일 정국은에게 사형이, 양우정에게는 7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신문기자로서는 건국 후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은 정국은은 이듬해 12월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다.

1954년 7월 문교부장관 이선근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글 간소화 방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전국의 신문들은 이에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한글맞춤법은 이 민족을 혹독하게 짓누르던 일제치하에서 제정되어 별 문제 없이 잘 사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를 변경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승만 대통령이 '신문을 정비한 후 간소화된 한글만으로 신문을 만들자'라는 담화를 발표,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맹렬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서울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문정비론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인위적으로 신문을 정비하게 되면 강

권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언론통제가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9 · 28 수복 당시에 이미 정부는 본격적으로 신문정비를 시도하였었다. 서울 수복 후 신문 재등록 기회를 이용, 실행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지는 4개사로 하고 지방지는 각도 1~2개 신문사만 두기로 했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단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새로운 신문정비 구상은 매우 구체성을 띠고 있었다. 첫째, 발행부수가 10만부는 되어야 하고 둘째, 서울의 인구와 비교하면 2~3개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발간하는 신문은 14개로 이중 최고로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이 8만부 정도였다. 10만부를 넘는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①신문주권자들의 합의에 의한 폐합, ②민간지도자들의 협의에 의해 몇 개 신문사를 지정, ③서울시 내외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최고표를 얻은 2~3개의 신문만 구독토록 하고 그 밖의 신문들은 사보지 못하게 권고할 것 등의 신문정비 방안을 구상하였다. 물론 이 같은 구상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계획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이를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당시 신문판권은 허가제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특정 신문만 공인된다면 판권은 더욱 이권화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결과만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따라서 언론계는 힘을 모아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은 '권위 있고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신문이 되라'는 교조적인 언론육성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언론계의 호응을 받지 못했으며, 대통령의 언론정비론은 한낱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4. 동아일보 정간과 대구매일 백주테러

자유당 정부의 언론탄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1955년 3월 17일 정부는 동아일보에 대한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3월 15일자(지령 9,874호) 1면 한미석유협정에 대한 보도기사의 제목 '高位層裁可待機中(고위층재가대기중)'의 윗부분에 난데없이 '傀儡(괴뢰)'라는 두 글자가 인쇄되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傀儡' 두 글자는 다른 기사 제목에 쓰기 위해 채자되었던 것이 정판 작업과정에서 그곳에 잘못 들어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초쇄에서 발견한 동아일보는 즉시 지형과 연판을 수정하여 다시 인쇄하고 오식 인쇄된 신문은 폐기하였다. 아울러 이미 가두판매에 60부, 일선방면에 300여 부가 발송된 것을 파악, 즉시 회수작업을 벌여 100여 부를 회수했다. 회수하지 못한 200여 부 가량은 독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뺀 나머지 독자에게는 모두 수정 인쇄된 신문을 배달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는 동아일보에 대해 무기한 발행정지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 경찰국은 이 오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던 중 3월 22일 정리부장 권오철, 문선부원 원동찬을 국가보안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청했고 발행인 국태일, 주필 겸 편집국장 고재욱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때 정부에서 적용한 발행정지처분의 법적 근거는 미군정법령 88호였다.

정부는 한 달 후인 4월 16일, 발행정지를 해제하여 동아일보는 18일부터 복간됐다. 그러나 이 오식사건으로 정리부장 권오철이 해임되었다. 한편 정부의 동아일보 정간 조치는 신문사의 단순한 실수를 언론탄압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14일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대구매일신문은 이른바 애국단체연합회의 폭력세례를 받았다. 대구매일테러사건이었다. 사건은 13일자에 게재된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에서 애국단체연합회가 주도하는 적성 감시위원단 축출데모를 비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애국단체연합회는 사설 내용에 격분하여 테러단 20여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그것도 경북도경찰국 뒷마당에서 출발, 백주대낮인 오후 4시 25분께 신문사에 난입하였다. 이어 국민회 경북도본부 총무차장과 자유당 경북도당 감찰부장 지휘 아래 편집국과 공무국의 인쇄시설을 모조리 파괴하고 여러 명의 공무국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 경찰이 취한 태도는 언론계와 국민을 더욱 격분시켰다. 테러단의 전세버스가 경북도경찰국 뒷마당에서 출동하여 테러를 끝낸 후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공공연한 묵인 내지는 조종 아래 행하여진 테러임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경찰은 테러단을 체포하는 건 고사하고 거꾸로 피해를 입은 대구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죄명을 붙여 구속함으로써 노골적인 언론탄압의 저의를 드러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이 사건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자유당 의원들은 테러단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테러한 청년들에게 훈장을 주고 싶다'거나 '대구매일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의거'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국 사찰과장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며 자유당 정권이 갖고 있는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여당계 신문을 제외한 많은 신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사설로 테러행위를 비난했다. 각 신문사의 사설 제목은 조선일보 '대구매일피습사건의 경위', 동아일보 '언론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폭행', 한국일보 '테러를 자행하는 자를 엄단하라', 경향신문 '국회에까지 미친 대구사건' 등이었다. 하나 같이 날카로운 필봉으로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식의 정부 언론관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한편 사설을 쓴 대구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는 1심에서 실형 10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지법의 무죄선고로 석방되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대구고법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다음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2절

신문윤리강령 제정

1. 선거법 파동과 반대 투쟁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언론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자유당 정부는 1957년 12월 7일 민의원선거법개정안(협상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여야는 선거법을 놓고 협상을 꾀하다가 마침내 동월 10일 합의에 이르러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제72조, 제84조 등 4개 조항이었다. 제72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킬 목적으로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자 또는 편집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약속 혹은 신입(申込)을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논평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84조는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를, 제167조는 '누구든지 연설 · 신문 · 잡지 · 벽보 · 선전문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 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른바 허위사항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협상으로 개정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국회 및 정당 출입기자단은 언론을 규제하는 4개 조항의 삭제를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물론 중립지인 자유신문, 평화신문, 한국경제일보도 사설을 통해 '새로 마련된 선거법은 헌법정신과 규정을 무시하여 민주주의의 국기를 파괴하는 것이며 언론자유를 묶어놓고 선거를 실시

하게 될 때에는 국민의 비판을 봉쇄한 암흑선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이와 함께 1957년 4월 7일 전국 일간신문, 통신사의 주필, 논설위원 등을 중심으로 결성한 편집인협회는 12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언론규제조항을 삭제 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958년 1월 1일 새해 벽두에 4개 항의 언론규제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자유규제조항을 강력히 반대해온 편집인협회는 1958년 1월 11일 전국의 언론인과 유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전국언론인대회를 서울 시공관에서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의 알아야 할 권리에 부응하여야 한다. 신문은 보도 및 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일반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유는 물론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1항에 의거, 신문 · 통신사 주필 및 편집국장이 채택한 성명과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선거법 중 언론규제의 독소를 내포한 4개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조항의 삭제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 삭제가 실현될 때까지 입법을 자행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전국언론인대회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열린 지방언론인대회에서도 정부처사를 규탄하며 4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월 25일 개정선거법을 공포하고 5월 2일 민의원선거를 시행하였다.

2. 언론자유 억압하는 보안법 제정

이후 자유당은 다시 1958년 11월 '공산도당의 흉모를 분쇄하기 위해 보안법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만난을 배제하고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강화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산당의 간악한 술책에 빠지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보안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보안법개정안 중 언론계에서 반대한 조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惑亂)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제17조 5항으로 언론자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었다.

또한 헌법상의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위정자에 대한 비판의 길을 막는 제22조 그리고 제30조 1항(자격정지)과 제37조의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 역시 언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날인 11월 17일 편협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 앞서 언급한 조항의 삭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편협은 언론규제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23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편협은 다시 12월 11일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당국의 방해로 열지 못했다. 그러자 전국의 신문들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첫째, 간첩의 개념을 크게 확대하였고 둘째,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억압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2월 11일 법무장관의 제안 설명 시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하였다. 다만 여야 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안에만 합의를 해주었다. 하지만 19일 오후 3시 10여 명의 자유당 의원들만이 국회 법사위에 모여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격분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의사당 주변은 정사복경찰관들이 삼엄한 경계를 폈다.

다음 날인 20일 오전 10시께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당 소속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오자 20여 명의 경위들이 의석을 정리하며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의 이부자리를 거두려고 하자 의원과 경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22일 정부는 전국의 무술경찰관 중 100여 명을 국회경위로 임명했고 24일 오전 10시께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부의장실에서 경호권 발동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당 안에서 농성중인 야당 의원들은 경위들에 의해 의사당 밖으로 쫓겨났고 여당 의원들은 이 사이에 국가보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 정부의 본격적인 언론탄압 추진

보안법 파동이 발생한지 4개월 뒤 경향신문에 대한 폐·정간사건이 발생하였다. 1959년 4월 30일 밤 공보실이 경향신문에 발행허가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경향신문에 대한 공보실의 폐간통고문에 적시되어 있는 경향신문 폐간이유는 이랬다.

먼저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 허위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2월 4일자 조간의 '여적'란을 통해 허멘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견강부회하여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항거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2월 19일자 3면 '사단장은 기름을 팔아먹고'라는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4월 3일자 조간 '간첩 하모를 체포'라는 기사는 당국의 게재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앞으로 간첩 하모와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의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월 15일자 이승만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개정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명분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2월 4일자 단평칼럼 여적과 2월 2일부터 석간에 연재되고 있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에 대한 단평에서 '인민이 성숙되지 못하고 그 미성숙 상태를 이용하여 가장된 다수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두말없이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전재한 기사가 문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한국의 현실을 논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관용·아량·설득에 기초한다는 정치학적 논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되느냐의 원시적 조건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결정에 무력할 때는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2월 4일자 조간에 다소 강경한 어조의 '여적' 기사가 나가자 서울시 경찰국은 사찰과 형사 2명을 경향신문사에 보내 편집국장 강영도를 시경으로 연행, 여적의 필자를 대라며 약 8시간 동안 신문한 후 돌려보냈다. 이어 2월 5일 서울시경은 서울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신문사측에 제시, 여적 원고를 비롯한 사설, 기자석, 논문 등 다수의 원고를 압수해 갔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경향신문은 5일자 석간에 '수정할 이유 찾지 못했다. 문제화된 여적 내용에 관하여'라는 사설에서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불

퇴전의 투쟁을 감행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 정부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신문사의 입장을 밝힌 후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암시한 구절은 추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에는 검찰의 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에 항거하는 준항고를 엄상섭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제출한 준항고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여적'란에 쓰인 진정한 다수의 결정은 선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국민감정이 깊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한국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한 것인 만큼 범죄가 구성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②대법원의 선거소송판결을 보더라도 선거결과가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영장은 부당하다. ③압수수색영장은 그 혐의사실이 사실자체로서 형법규정에 저촉될 때에 발부되어야 한다.

이 준항고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부는 10일 38건의 압수원고 중 수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건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환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4. 경향신문 폐간과 언론계의 반발

이후 경찰은 경향신문 주요한 논설위원을 형법 제87조(내란), 제90조(예비음모 · 선동)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요한 논설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적의 필자는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데 따른 조치였다.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발부를 보류하자 수사당국은 영장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수사당국이 구속영장을 자진 철회한 것은 첫째, 법원이 영장의 처결을 보류했고 둘째, 곧 제33회 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므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주요한 논설위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보다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검사였던 서울지검 조인구 검사는 2월 28일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와 여적의 필자 주요한을 내란선동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어 앞서 언급했던 경향신문 4월 3일자 조간 3면의 '간첩 하모를 체포'라는 1단짜리 기사도 경향신문의 폐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기사 보도 이후 서울시경은 사회부 기자 정달선(법조 출입)과 어임영(시경 출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혐의내용은 정달선은 3월 28일자 석간에 간첩 염태식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기사를 냈다는 것이었고, 어임영은 4월 3일자 조간에 대남간첩 하모를 체포하는 동시, 미화 1,000달러를 압수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기자를 구속한 경찰은 편집국장 이관구, 사회부장 오소백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4월 24일 검찰은 이들 중에서 어임영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달선은 기소유예, 이관구와 오소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월 16일자 석간 3면에 보도된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 제하의 홍천지국 발신기사 문제로 홍천지국장 장원준, 기자 금기식, 오선형이 구속됐다. 이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4월 28일 춘천지법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4월 15일자 석간 1면에 '헌법개정은 불필요, 4선 출마에 당선희망, 이 대통령 보안법개정도 반대'란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 중 보안법개정 관계의 회견기사가 오보라면서 정부에서는 경향신문을 압박하였다. 이에 경향신문에서는 회견녹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는 법으로 이룩, 개정도 법에 따라야만'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보안법개정도 반대'라는 내용으로 착각했음을 시인, 정중히 취소 · 정정하는 한편 회견 녹음초까지 신문에 실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필화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정부로부터 발행인 교체 압력을 받아온 경향신문은 상무 김철규 신부를 내세워 1959년 3월 1일부터 김성천 공보실장과 발행인 교체에 대한 막후교섭을 벌였다. 그리고 3월 5

일 정식으로 김철규 신부를 발행인으로 하는 발행인 교체신청서를 공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3월 16일 공보실장은 김철규 신부가 한창우 사장보다 더욱 반정부적인 인사라는 이유로 교체신청서를 반송했다.

1959년 4월 30일 밤 10시, 외무장관 조정환 사회로 열린 국무회의는 경향신문의 폐간조치를 결정하고 10시 15분께 공보실을 통해 발행허가취소 통지서를 경향신문에 전달했다. 미리 신문사에 와서 대기 중이던 서울시경 형사대는 이 통지서가 전달되는 즉시 힘차게 돌아가는 윤전기를 정지시키고 신문사 앞에 주차하고 있던 신문사의 모든 차량에서 사기를 철거했다. 이날 밤 10시 15분까지 인쇄된 5월 1일자 조간신문은 경찰에 압수당했고 이미 지방에 발송된 신문도 현지 경찰에 의해 압수당했다.

법정으로 옮겨진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이해 6월 26일 서울고법에서 '경향신문에 대한 발행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경향신문사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공보실은 그날로 폐간처분은 취소하고 '무기정간'이라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무성의로 질질 끌어오다가 4 · 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한 당일 하오 대법원 연합부는 '경향신문 발행허가정지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1년 만에 복간되었다.

5. 신문편집인협회 설립과 신문윤리강령 제정

1957년 3월 17일 합동통신사 중역실에서 신문주간창설준비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신문의 본질적 윤리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규범을 밝히기 위해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신문주간창설준비위원회 참석자 명단

● 김광섭(동양통신), 박홍서(시사통신), 심정섭(동화통신), 오종식(한국일보), 이관구(경향신문), 이상노(동아일보), 이원혁(합동통신), 이근수(서울신문), 최병우(코리아 타임스), 홍종인(조선일보).

며칠 후인 3월 21일 역시 합동통신사 중역실에서 열린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신문주간 준비위 집행위에서 기초한 신문윤리강령(안)과 편집인협회규약(안)을 편집인협회(가칭) 발기예비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3월 29일 서울 북창동에 있는 공보실 공보관에서 열린 제4차 신문주간 준비위 예비회의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발기인 예비회의로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신문주간준비위 집행위가 이미 천관우(조선일보)에게 위촉했던 신문윤리강령(안)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이렇게 발기인 예비회의를 마치고 4월 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보관에서 이관구 사회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신문윤리강령(안)과 편집인협회규약(안)을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자구수정을 일임키로 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칭) 발기위원회 참석자

● 고제경, 고여상, 김광섭, 김봉진, 남상일, 박홍서, 석보, 설국환, 성인기, 심정섭, 원경수, 이관구, 임근수, 정인준, 천관우, 최병우, 홍종인.

이렇게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오후 7시 공보관 강당에서 개최된 편집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채택되었고 다음날 오전 10시 서울 명동 시립극장에서 있은 독립신문 창간 61주년 기념식 및 제1회 신문주간대회에서 선포되어 신문의 자율적 기능의 토대를 이룩하는 헌장으로 삼아 오늘에 이

르고 있다.

한국의 신문윤리강령은 1950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유엔 보도자유소위원회에서 기초하여 발표된 바 있는 국제신문인윤리강령을 위시하여 전 미국신문편집인협회의 윤리강령 그리고 미주리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바 있는 신문윤리강령 등 광범위한 자료와 문헌을 수집, 한국실정에 맞게 조정해 제정한 것이었다.

또한 윤리강령은 당면한 언론자유의 쟁취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①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보도와 논평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며 ②신문의 공기성과 신문인의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자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며 ③객관적 보도와 공정한 논평 ④사회공익의 존중 등 신문의 독립성 보장 ⑤개인 · 단체의 명예와 인권의 존중 ⑥신문의 고상한 품격과 신문인의 높은 긍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국 언론인들은 강령을 지표로 삼아 언론인의 결속과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의 이러한 정신은 이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걸어온 언론투쟁의 발자취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당 정권은 그들의 독재와 부패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신문을 적대시했고 기회만 있으면 언론을 제한하려는 법률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편집인협회가 창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1952년에 '신문 정기간행물법'을 비롯하여 1953년 '출판물법', 1955년 '출판물조치법안', 1956년 '국정보호 임시조치법안' 등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론과 야당의 공세를 받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꾸준히 언론규제 입법의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편집인협회가 발족한 후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민의원의원 선거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 가운데 선거기간 중 언론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편집인협회는 즉시 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고, 동년 12월 24일에는 시공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 동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 5월 22일에 시행되는 총선거를 의식한 협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성토를 가했다. 1958년 12월 24일 '24파동'을 겪으면서 국가보안법이 개악되기까지의 전후에 걸쳐서도 신문편집인협회의 주된 활동은 언론규제입법에 대한 반대투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에 대해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 폐 · 정간처분을 내렸을 때도 편집인협회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결의성명과 함께 악법투쟁을 당면한 최대 목표로 삼고 강력한 언론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계의 반대를 묵살한 정부는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언론탄압을 자행하다 4 · 19 민주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6. 신문윤리강령 통과

1961년 8월 3일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인준했고 1963년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 후신인 한국신문발행인협회도 이를 추인했다. 이에 앞선 1961년 7월 30일 신문윤리강령이 수정되었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1년 4월 5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6회 정기총회에서는 신문의 책임이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자율규제기구의 설치에 따른 준비를 운영위원회와 보도자유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2~3개월 안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토록 의결했다. 운영위원회와 보도자유위원회는 곧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①가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칙 ②신문윤리실천요강 ③신문윤리강령 중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중복되는 부분의 수정 등 각안을 입안하고 고재욱 편협회장, 천관우 운영위원장, 금용구 보도자유위원장을 대표로 선정, 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 결과 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도 동 취지를 전적으로 찬동하고 8월 3일 두 협회는 수정된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각각 추가 채택하는 한편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회칙을 인준했다. 신문편집인협회는 1961년 7월 30일 제7회 임시총회에서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확정된 최초의 신문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신문윤리강령 전문

- 우리들 신문인의 사회적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더욱이 조국을 민주 통일 독립국가로 재건하는 민족적 과업에 당면하여 그러하다.

- 우리들 신문인은 이러한 자각에 투철하여 신문의 윤리를 바로 잡고 신문인의 권위를 굳게 지키고자 이에 전국 일간신문 · 통신사 편집인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조직하고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한다.

- 우리들 신문인은 그 양식으로서 이 강령에 충실하여 신문에 대한 민중의 요청에 부응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이 강령의 정신은 편집인만이 아니라 모든 신문관계자들이 함께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강령은 우리들 신문인의 자율적인 실천을 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이 강령에 충실하지 못하는 신문 및 신문인은 마침내 공중의 지지를 잃어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을 확신한다.

1) 자유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야 한다. 신문은 보도 및 평론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일반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유는 물론 이에 포함된다.

2) 책임

신문은 사회의 공기로서 그 공공성이 용인되고 신문의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공중이 신문에 의하여 사건과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는 신뢰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신문 최대의 책임은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함에 있다. 이 책임은 또한 공공성을 보전하는 최대의 요소이다.
신문은 항상 정의에 입각하여 부정과 대결함에 용감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 그 호소를 대신함으로써 그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3) 보도의 한계

보도는 사실의 정확 충실한 전달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보도는 출처 및 내용에 있어 보도의 가치가 확충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야 하며 집필자의 서명이 없이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4) 평론의 태도

평론은 독립불기의 소신을 공정 대담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특히 진실에서 고의로 이탈하려는 편파를 경계하여야 한다.

5) 독립성

보도 및 평론은 공공의 이익이 위배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선전이나 무가치한 목적에 이용될 수 없으며 이것이 타인의 명령 또는 의뢰라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정확 · 성실

보도 및 평론은 그 능력이 미치는 한 철저와 정확을 기하여 공중에 대한 성실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중대한 오보가 있을 때는 즉각으로 완전히 정정하여야 한다.

7) 공정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 비판을 받은 자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관용

신문은 스스로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비

혹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9) 품격

신문은 공공성에 비추어 마땅히 높은 품격과 긍지가 요구되며 특히 신문 및 신문인은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이 되는 행동은 일체 용납되지 않는다.

단기 4290년(서기 1957년) 4월 7일